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37호
- 나. 제출자 : 이인식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문구로 정비하여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다. 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및 실행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5조)
- 라.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안 제6조 및 제8조)

마. 정보격차의 해소 추진(안 제9조)

바. 공무원 및 국민의 지능정보화 관련 교육(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안 제13조 및 제14조)

#### 4.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상위법인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와 지능정보 사회 추진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 안 제9조에서는 정보격차의 해소 추진을 위한 시책 마련과 정보 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11조에서는 국민의 지능정보화 교육 무상 실시에 대하여
  -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하여

- 안15조에서는 구청장의 저작권 등록 및 보호조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조례 체계를 살펴보면 현행 40개의 조문 중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여 15개의 조문으로 간결하게 정비하여, 정보통신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배려를 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가치관·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